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일시 2020년 2월 21일(금) 14:20 ~ 17: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일 정

- 14:20~14:30 접수 ▶사회: 김병필 교수 (KAIST)
- 14:30~14:35 ▶개회사: 고태수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 디렉터)
- 14:35~15:10 발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기대와 우려]
▶발표: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 15:10~16:50 전문가 좌담회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데이터 3법의 역할과 전망]
▶좌장: 고태수 교수(서울대학교)
- 전문가 패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
 - 오병일 대표 (진보네트워킹센터)
 - 최대선 교수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 김진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이진규 이사 (네이버)
 -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 16:50~17:00 폐회

목 차

발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기대와 우려	최 경 진	1
----------------------------	-------	---

전문가 좌담회

▶오 병 일 (시민사회 의견서로 같음)		15
▶최 대 선		29
▶김 진 환		33
▶강 태 옥		37
▶이 진 규		41

【발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기대와 우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How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rve Each Other



Images from Google



20대 국회 입법 노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주요 방향	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김석기의원안, 인재근의원안, 이재정의의원안, 진선미의원안, 변재일의의원안, 송희경의원안, 소병훈의원안
개인정보 개념 정의 명확화 및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김석기의원안, 인재근의원안, 이상민의원안, 정병규의원안, 윤상직의원안, 박인숙의원안, 이진박의원안, 민경욱의원안, 이재정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김규환의원안, 김경우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오세정의의원안, 송희경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강화	신창현의원안, 정점식의의원안, 김재권의의원안, 송갑석의원안, 백해련의원안, 민경욱의원안, 박완수의의원안,
영상정보의 처리 근거 확대	최인호의원안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통합	인재근의원안, 이재정의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이재정의의원안, 박선숙의원안, 윤후덕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장정숙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이학영의원안, 정재호의원안, 홍의락의원안, 김정재의원안
생체인식정보 또는 민감정보 보호 강화	이찬열의원안, 강병원의의원안, 강효상의의원안, 민경욱의원안
제재 강화	이수혁의원안

2020. 2. 21.
최경진
3

데이터 3법 입법 경과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경과
 - 2020.1.9.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2.5. 공포
 - 2020.8.5. 시행 예정

2020. 2. 21.
최경진
4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법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020. 2. 21.
최경진
5

개정이유

신용정보법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 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0. 2. 21.
최경진
6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 개념 정의 합리화
-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일원화
- 양립가능성에 근거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허용
-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일원화

2020. 2. 21.

최경진

7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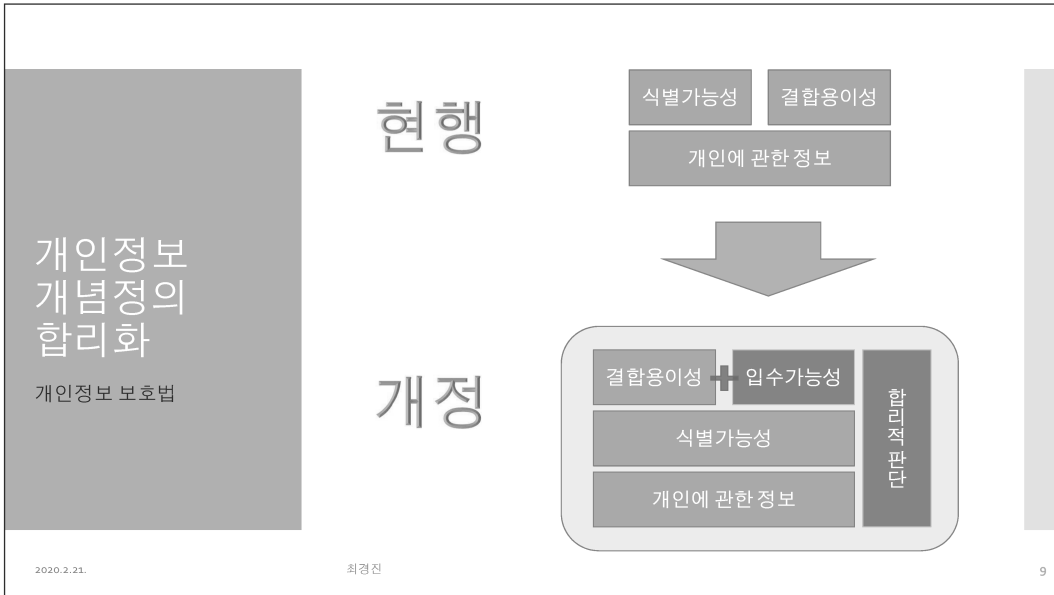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기능 통합, 거버넌스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 중앙행정기관
 -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정 2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

2020. 2. 21.

최경진

8



개인정보
개념정의
합리화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3가지 유형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명정보: 위의 2가지 유형의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非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적용제외) 명확화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익명처리한 정보 관련 규정(신용정보법 제2조제17호, 제11조의2, 제17조의2, 제26조의4, 제40조의2, 제52조)

2020. 2. 21.
최경진
10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허용

신용정보법

-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허용
- 수집이 허용되는 공개된 개인정보 유형
 -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

2020. 2. 21.

최경진

11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2020. 2. 21.

최경진

12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제2조 제8호)
 - 공익적 기록보존 등
- 개정 효과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가능

2020. 2. 21. 최경진 13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신용정보법

-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통계작성
 -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 연구
 - 산업적 연구를 포함
 - 공익적 기록보존 등
- 개정 효과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5항의 적용없이 가명정보 제공 가능

2020. 2. 21. 최경진 14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 포함 금지(제28조의2 제2항)
 - 가명정보 결합 제한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금지의무
 - 재식별금지
 - 가명처리 과정에서 식별정보 생성시 처리 중지 등 의무
 - 재식별금지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2020. 2. 21.

최경진

15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결합 제한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
 -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 2. 21.

최경진

16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 안전조치의무 등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록물 작성 및 보관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0. 2. 21.
최경진
17

가명정보
활용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 금지의무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됨
 - 위반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함
 -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0. 2. 21.
최경진
18

새로운
처리근거:
양립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 허용범위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 고려사항
 -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 개정 효과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020. 2. 21.

최경진

19

새로운
처리근거:
양립가능성

신용정보법

- 허용범위
 -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고려사항
 -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개정 효과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5항의 적용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가능

2020. 2. 21.

최경진

20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대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중 하나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20. 2. 21. 최경진 21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 전송요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들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간의 권리 · 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들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2020. 2. 21. 최경진 22

시행을 위한 준비

- 데이터 3법 관련 향후 시행 준비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하위법령 작업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정
 - 가명정보 결합 절차
 - 양립가능성에 근거한 처리 가능 범위 명확화
 -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법 해설서
 - 가명정보 처리 예시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EUGDPR 적정성 결정 마무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추진
- 각 분야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마련


2020. 2. 21.

최경진

23

기대

-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확대
 -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
 -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한 활용
 - 양립가능성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비개인정보 합리적 구별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인공지능(A.I.) 발전에 기여

2020. 2. 21.

최경진

24

기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거버넌스 일원화
 - 시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가능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 가능
 - 집행 기능 일원화로 정보주체 보호 수준 제고에 기여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통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일원화
 - 중복 규제 감소

2020. 2. 21. 최경진 25

우려

- 개정 데이터 3법에 대한 오해 또는 과도한 기대 → 과도한 실망
 - 가명처리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활용 가능? X
- 양립가능성과 관련한 해석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 가능한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는 수범자에게 혼란 야기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 신용정보법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
- 개인정보, 가명정보, 비개인정보 사이의 구별에 대한 시각이나 해석의 차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범위에 대한 논란 지속 가능

2020. 2. 21. 최경진 26


우려

- 가명처리의 방법, 절차, 기준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실제 가명정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非개인정보**와 유사해질 우려
 - 특히, 기존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정보와 구별되지 않고 유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개정의 실효성 감소
-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해석 범위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음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의 상이한 규정
- 가명정보의 결합과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의 반출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실무상 혼란 발생 우려
- 기술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

2020. 2. 21.
최경진
27

우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정쟁 또는 이념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
 -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혹은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간 충돌 발생 가능성
 - 전문성·전문인력이나 충분한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의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 저하
- 합리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데이터 경제나 인공지능(A.I.) 활성화 저해

2020. 2. 21.
최경진
28

【전문가 좌담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1.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시 설립될 예정임.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일관된 시민사회의 요구였음. 국제인권규범에서도 1990년 <유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지침> 이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야말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토론문은 시민사회 의견서로 같음합니다.

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인 국민과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정보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는 시대에 권한이 강화된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임.

○ 국민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중요성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반면, 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정부부처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본권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모든 조직 구성원의 자각을 촉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함.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현직 공무원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몫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음.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증원과 독임제 행정부처의 역할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간의 중복과 혼란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시민사회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함.

2.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1) 내용적 지침은 보호위원회가 제정해야 함.

○ 지난 2020년 1월 22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는 중요한 내용적 지침들을 보호위원회의 설립 전에 기존의 정부부처가 정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를 처음부터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없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매몰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부부처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신뢰할 수 없음. 관계 부처의 역할은 보호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 구체적인 지침은 새로 설립되는 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EU와의 GDPR 적정성 평가의 추진도 지금까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새롭게 구성된 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보호위원회의 투명성

○ 보호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를 위한 조건으로 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3) 가명처리의 수준

○ 가명처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접 식별자만을 제거하는 정도의 개인정보 처리를 가명처리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별도 규정한 만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도록 처리되어야 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역시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기술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포함해서는 안됨.

○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가명처리의 기술적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임. 즉, 안전조치로서 가명처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관련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법률이 가진 근본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개정되어야 함.

(4) 과학적 연구의 범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항 8호는 다음과 같이 과학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안 이유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 내 부적인 상업적 연구까지 포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연구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음.

○ 따라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도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구’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절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가하는 것이 좋을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가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지는 바,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규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1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시민사회는 비록 가명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애초 수집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게 되는 바, 과학적 연구가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학술 연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비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물이 사회에 공개, 공유되어 사회 전체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연구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2조 제1항 제9의2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 대신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법률 조항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도 저해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5)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및 제17조 4항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혹은 제공할 경우의 고려 사항으로 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로 EU GDPR의 경우에는 제6조 4항 양립가능한 처리의 고려사항으로 (a)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b) 특히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c) 특히 개인정보의 성격이 제9조의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또는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d) 의도된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처리(encryption) 및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등 적절한 보호수단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자칫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노력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즉 정보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제정될 시행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이 정보 주체에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들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차원에서 재논의되기를 기대함.

(6)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의4 1항은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왜냐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당연히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시행령에서 제3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4 2항은 단지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그래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및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제공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록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임..

○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함.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이용될 경우 애초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보관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과학적 연구 및 통계 작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가명정보라고 해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것임. 제28조의7에서 제21조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모호한만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가명정보의 결합

○ 시민사회는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조항에 반대해왔음. 이는 우선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이 되어 영리적인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업들 사이의 개인정보 결합을 지원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3이 포함되었지만, 가명정보의 결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함.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합된 가명정보로부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여하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들, 결합에 사용될 연계키의 제공자,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연계 방식이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결합된 가명정보에는 폐쇄적인 안전시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명정보 형태로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됨.

○ 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접근하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정보 결합의 목적이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지, 해당 연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결합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등 해당 목적을 달성한 후에 안전하게 폐기해야 함.

○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부터 안전시설 내의 데이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함.

○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사실은 기록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결합/연구의 목적, 원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 건수,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등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정보 일체)

○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전문기관을 자문하고 감독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 함.

(1) 법 해석상의 혼란 해소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분산되어 있고 중복, 유사 규정으로 수법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상의 유사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조항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처리함으로써 유사 조항 사이의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함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정의 조항이 없음.

또한,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익명처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함께 처리되었음에도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법들이 줄속적으로 통과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어쨌든 서로 다른 법률 사이의 이와 같은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명확화

○ 개정안의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민감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제23조에 근거해서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석해 왔음.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발간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가명처리도 처리의 하나이므로 민감정보에 대한 기존의 처리 원칙, 즉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 또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 확인> 결정(2018. 8. 30. 2014헌마368_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재판관 서기석은 별개의견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음. 어떤 해석이든 헌법재판소 역시 민감정보는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만일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

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근거없이 완화한 것이 되며 이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 보호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민감정보가 건강정보, 의료정보 일 텐데 해외에서는 의료/건강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GDPR에서는 9조 특별범주의 개인정보처리(민감정보)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의 이용을 위해 ‘국가보건서비스법(NHS Act 2006)’의

Section 251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아이슬란드의 경우 건강분야 과학적 연구에 관한 법률(the Act on Scientific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no. 44/2014)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건강연구규정 2018(Health Research Regulation 2018)에서 건강연구와 관련된 거버넌스 및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건강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나라도 23조에서 민감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구체적인 거버넌스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가명처리를 통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정법 발의 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항(예를 들어,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by Default, DPO 제도 등),

프로파일링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포함 등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위원회 혹은 소수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정보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전문가 좌담회】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모두 해본 연구자 입장에서

최 대선*

서언

본 행사가 인공지능 “법”학회와 “정책” 이니셔티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기술 연구자 입장에서 기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함.

발표자는 의료, 금융, 보안 분야 빅데이터 및 SNS,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음

현재까지 산업 및 연구자가 획득,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나 퀄리티에 대해 경험한 바에 따라, 데이터 3법으로 이상적 데이터 공유 환경이 조성되면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 드는 기대점을 소개함

반면, 이전부터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을 연구해오다, 2016년 제정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비식별조치 적정성 심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드는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함

기대점

공개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환경에서 의료 분야, 금융 분야의 여러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는데 한계점은 비식별 조치로 인해 데이터가 뭉개진 것도 있지만, 연도별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는 점. 의료 분야의 추적 연구나 나이가 들에 따라 변하는 내용을 팔로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비공개 데이터의 외주 분석 연구자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식하여 데이터 분석을 전문가에게 외주하는데 극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와, 외주 연구 시에도 온사이트 (제공기관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 연구를 해야 하는데, 온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적용하는데 한계를 체감함

SNS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데이터 수집 주체 (포털사이트, SNS운영업체)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우려가 있었고, 분석 연구 후에도 위법소지(결국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 외 활용을 한 모양이 되었으므로)에 대한 우려로 연구결과를 마음껏 발표하지 못한 경험도 있음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라, 상기의 경우들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나 법적인 테두리 하(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컨셉으로 풀어간 기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넘어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본인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법적 정의)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상황이 한계들을 체감해온 연구자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점차 활용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현재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이므로,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임. 발표자도 데이터를 달라,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어떤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함

우려점

단순히 가명조치를 하면 어떤 것도 해도 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음. 실제로 각계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면, 법 통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음

국내 개정법령의 가명조치의 배경이 되는 유럽의 GDPR에 가명조치가 등장한 배경은 데이터의 활용을 도와주려는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니 데이터를

그냥 보관/관리하지 말고 최소한 가명조치라도 해서 관리하라는 취지임. 그래서 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분리하여 식별정보는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사실 많은 기업에서 원래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기업 자체의 식별자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관리해 오고 있음. GDPR은 그걸 하라는 취지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데이터 공유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됨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물론 재식별이 범죄이니 사후 엄한 처벌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문을 없애고 무단 침입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다른 보호조치를 추가해야 함 (문을 없앤 후 CCTV를 추가하는 것 같은)

결언

데이터 3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연구자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상황임

프라이버시보호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명정보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어 적용되어 있는 상황과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트레이드 오프이지만, 반비례 곡선의 상향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구체화 단계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함

가명정보 개념 관련 핵심 고려 사항



김·장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

KIM &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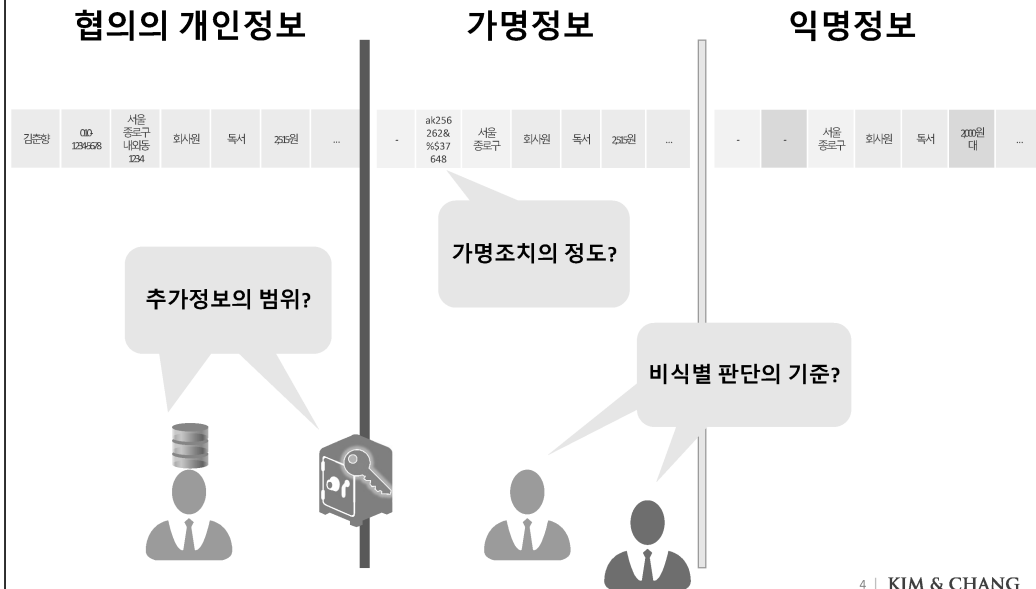
가명정보의 주요 요건

- ① 가명 조치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 = 비식별 조치)
- ② 추가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 ③ 비식별성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개념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직업	취미	구매금액	...
김춘향	010-1234-5678	서울 종로구 내외동 123-4	회사원	독서	2,515원	...
-	Ak256262&%\$3764890@!3	서울 종로구 내외동	회사원	독서	2,515원	...
-	-	서울 종로구 내외동	회사원	독서	2,000원대	...

가명정보 해석의 과제



가명정보 해석의 과제

① 가명조치(비식별화)의 정도

- ✓ 식별자 삭제 또는 대체; 속성자 존치 (경우에 따라서 일부 삭제 또는 대체)
- ✓ k-anonymity 등?

② 비식별 판단의 기준

- ✓ 개인정보 처리자 (가명 조치 및 이용); 가명정보 수령자 (제공 시)
- ✓ 객관적 제3자?
- ✓ 공개의 경우?

③ 추가 정보의 범위

- ✓ key code data의 복원수단: 암호화키, matching table
- ✓ 원본DB?

5 | KIM & CHANG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견이나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고,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저희 사무소에 있으므로 저희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복제, 유통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 또는 발표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IM & CHANG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el: 02) 3703-1114 Fax: 02) 737-9091 / 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전문가 좌담회】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데이터 3법의 역할과 전망

강 태 욱*

*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에 대한 이익권 신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 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기초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 삭제, 자동화 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권을 부여함(36조의2)
- 자동화 평가의 의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함.
- ‘자동화 평가’라는 용어의 의미상 GDPR 상 ADM(automated decision making)에 가까워보이나, 입법 제안에는 자동화평가에 대하여 profiling이라고 부기하고 있음.
- 설명요구권 등의 대상이 되는 처리자는 개인신용평가 회사 및 일정한 범위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한정되고 있어, 신용정보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일반 상기업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여짐.
- 인정된 권리는 설명요구권(1항), 이의제기권(2항)으로 구성되고, 이의제기권은, 정보제출권(1호), 부정확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요구권(2호 가.) 및 재산출요구권(2호 나.)로 구성된다.
-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설명요구권(1항)과 이의제기권(2항)의 행사를 거절할 수

* 법학박사, 변호사

- 있는데, (i)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ii)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따를 경우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iii) 그와 유사한 경우로 규정됨.
-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ADM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거부권, 22조 1항)가 배제되는 경우로, (i)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법정된 경우, (iii) 명시적 동의에 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 신용정보법의 규정과는 유사하나 미세하게 다름(예컨대, 우리 신용정보법에는 재산출 요구권이 있으나, GDPR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있는 대신, Recital 71에서 보장하여야 하는 suitable safeguards의 하나로, human intervention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여야 들고 있으나, 재산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자동화된 평가(profiling)에 대하여 기존 법제 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음(고학수 등, 프로파일링 관련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 방안 연구, KISA, 2018. 12. 등 참조). AI에 의한 평가 역시 이 범주 내에 해당할 것임. AI에 의한 개인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AI에 의한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법의 체계 내에서 포섭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자동화평가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특히, 동의권)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자동화된 평가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수준의 규율로 보여짐. 다만, GDPR은 ‘처리에 적용된 로직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 및 그 중요성과 영향’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줌으로써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신용정보법 역시 유사하게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을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의 공개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공개된 정보의 이용

- 신용정보법은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음(15조 2항 2호). 그 중 다.목은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내용을 두지 않고 있고, 기왕의 대법원 판결(2014다 235080)이 여전히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이 판시에 따르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 신용정보법 상 ‘정보’라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한 것이므로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영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만약 정보 처리자가 공개된 장소의 정보들을 다수 가져오는 경우 그 정보는 개인신용정보만 있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것임. AI 기술이든 빅데이터 기술이든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 공개된 정보를 수작업을 수집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인데, 만약 적용법을 기준으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상당히 미묘한 해석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음.

* 나가며

- 개정법에 바탕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잘 보장하면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마련하는가에 있다고 생각됨.

토론문

이진규*

-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법 제4조 제2호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한 법 제3조 제5항은 “(전략)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전혀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됨. GDPR이나 CCPA 등에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 근거의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를 법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동의 만능주의’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AI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S/W에 장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이나믹한 목적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계는 현재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ICT 산업계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한 보호위원회 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제외한 7인)을 살펴보면 보호위원회 위원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이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임.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업관주의에 따른 비전문적 행정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도전에 대한

* 네이버 이사

대응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됨. 유럽연합의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현, EDPB)와 같은 전문가 단체를 법제화 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임

<참고: 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 제13조는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변경한 것 외에 아무런 변화를 두지 않았음. 자율규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그에 따른 법적 인센티브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자율규제 실패 사례를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가 ‘처리’라는 전체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수집 및 이용이라는 제한적 처리 행위에 적용되는 문제점은 법 제15조에 그대로 남아있음. 아울러,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법적 수집 및 이용 근거도 기존과 동일함.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5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동의 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활용 근거상의 제약은 그대로 남아있어 동의 편중 현상이 유지될 수 밖에 없음

- 신규로 법 제15조 제3항에 도입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의 내용은 유럽연합의 ‘compatible use’를 그대로 따온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유럽연합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Scientific/historical research, Archiving in the public interest, Statistical Purpose 등의 소위 ‘privileging rules’외에, ‘general rules’로서의 compatible use를 지나치게 좁게 가져가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는 현실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임. 법 시행령 제21조에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게다가, 최근 코로나감염증 사안에서도 확인했듯,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법 제3장 내지 제7장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추가적 보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용내역 통지, 파기(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음. 해당 특례들은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실효적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던 제도이나 ‘특례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도입이 되어 자칫 (향후 특례규정 정비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아

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제의 갈라파고스화를 강화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법 제28조의2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식별자(identifier)뿐만 아니라 속성값(attribute)도 포함이 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정보를 입수 가능한지,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성이 있는 정보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됨. 이로 인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음

기타, 가명정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나, 이의 잘못된 활용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명정보의 이용 활성화가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망성도 높다는 평가가 많음. 일정한 수준의 가명정보 보호조치를 수행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가명정보로부터 정보주체가 재식별 되거나 정보주체의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논거가 확인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를 면책하는 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AI 시대에 새롭게 논의되는 각종 권리, 특히 알고리즘 및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 생성 과정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이 논의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 아동에 대한 보호,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불복의 권리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담아낼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임.